

© 환경부공고 제 1998-97호

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구매 의무화 품목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
동시행령 제 31조 제 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공
기관에서 의무구매·사용(100%)하여야 하는 재활용
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8년 12월 18일

현대제철소 철강슬래그 골재제품 [고로·제강슬래그]



Reasons for certification

▶ 고로슬래그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의무화 품목입니다 ◀



현대제철 당진공장 철강슬래그(고로·제강)골재생산 및 판매회사

H 현대제철

NEVEN

New Environment Vision

|주|네비엔

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67-32 전화 041) 680-5180 FAX680-5181